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안]

**“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 ”**

2026.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목 차

I. 방송미디어통신 정책환경 변화와 주요과제	3
II. 미디어 주권 정립과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	9
III.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의 의의	11
IV. 제1기 비전[안]	14
V. 4대 목표별 정책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안] ..	15
1.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접근 강화	15
2. 국민 주도의 능동적 참여 확대	19
3. 안전 · 신뢰 기반의 자율적 선택 보장	23
4. 혁신 · 상생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29
VI. 조직역량 강화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41
VII. 추진일정[안]	42

I. 방송미디어통신 정책환경 변화와 주요과제

1 미디어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 미디어의 일상화에 따른 ‘미디어 기본사회’ 요구 증대

- **(미디어* 이용 일상화)** 디지털·AI 확산으로 미디어 이용영역이 소통·교육·문화·경제활동·사회참여 등 국민생활 전반으로 확대
 - * 방송미디어를 비롯해 디지털 플랫폼·통신 등을 기반으로 제공·이용되는 미디어 서비스 포괄
 - 스마트폰·플랫폼이 국민들의 필수적인 생활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금융·쇼핑·여가 등 다양한 활동이 온라인으로 전환
 - ※ **(‘25년 ‘일상생활 필수매체’로 스마트폰 선택 비율)** 10대 95.0%, 20대 95.1%, 30대 92.4%, 40대 89.1%, 60대 59.3%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 **(디지털 복지 수요 확대)** 누구나 미디어를 이용하고 그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복지’에 대한 정책 수요 증가
 - 해외*에서도 디지털 연결성을 경제·사회 참여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필수 기반으로 인식하는 추세
 - * OECD는 자료가 확인된 36개 회원국 중 19개국이 인터넷 접근을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 (『Closing Broadband Connectivity Divides for All』, 2025)
- **(국민의 주체적 역할 강화)** 콘텐츠 (C) - 플랫폼 (P) - 네트워크 (N) - 디바이스 (D) 간 연계 강화 및 생산·유통·이용의 경계 약화로, 국민과 미디어의 관계도 수동적 이용에서 능동적 참여로 변화
 - 국민이 콘텐츠를 직접 생산·공유하고 다양한 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를 선택·활용하는 등 미디어 생태계 전반과의 점점 확대
 - ※ UNESCO는 생성형 AI 환경에서 인간의 주체성·자율성 및 미디어·정보 리터러시를 통한 이용자 역량 강화를 강조 (『User Empowerment through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Responses to the Evolution of Generative AI』, 2024)
- **(공공적 가치의 중요성)** 미디어의 일상화로 접근성·다양성·신뢰성 등 공적 가치가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서 갖는 중요성도 증가
 - 국민의 신뢰·이용·참여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혁신을 뒷받침하고, 양질의 콘텐츠·서비스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 형성

✓ 디지털 복지와 국민의 능동적 관여를 확대하고 공공적 가치와 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조화를 이루는 ‘미디어 기본사회’ 요구 증대

◆ 플랫폼 중심 미디어 생태계 확장에 따른 책임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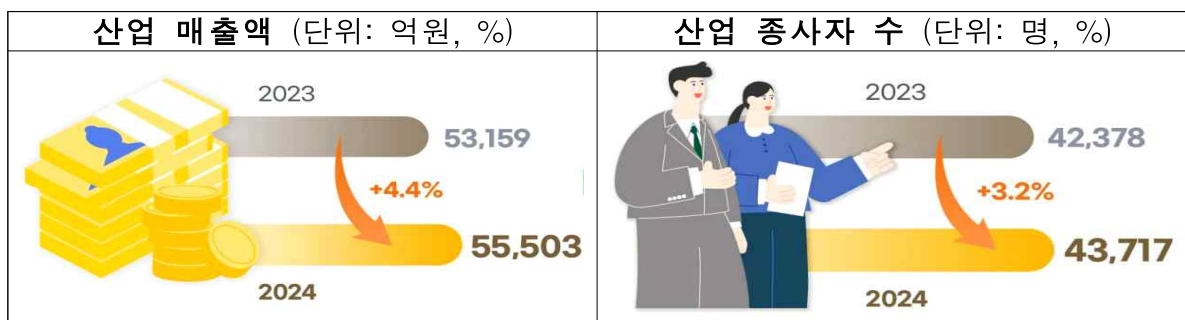
- **(플랫폼 중심 유통구조 확대)** SNS·커머스 등 이종(異種) 서비스가 콘텐츠를 매개로 미디어와 결합하며 플랫폼 중심의 통합적 미디어 유통구조로 재편
 - 콘텐츠 생산 주체와 유통 경로의 다변화, 콘텐츠 IP의 다매체 활용 확대로* 플랫폼의 콘텐츠 유통 및 사업화 기능 강화
 - * 트랜스미디어 : 하나의 콘텐츠를 여러 매체로 확장하되, 매체별 특성에 맞게 세계관·서사 등을 새롭게 구성하는 전략
 - **(게이트키퍼 강화)** 검색·추천·배열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정보·콘텐츠 노출과 선택에 미치는 영향 확대
 - 콘텐츠 노출·이용 쏠림 심화는 정보 다양성과 이용자 선택권 저해 우려
 - 콘텐츠의 도달범위·이용량·광고수익 등이 플랫폼 알고리즘에 좌우되면서 공정경쟁 여건에도 영향
 - **(플랫폼 책임성 요구 증대)** 서비스 장애, 불법·유해정보 확산, 클릭베이트* 등 플랫폼 이용 과정의 위험이 확대되면서 투명성·책임성 강화 요구 증가
 - * '클릭(Click)'과 '미끼(Bait)'의 합성어로, 과장되거나 자극적인 제목·표현 등을 사용해 이용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클릭을 유도하는 콘텐츠
 - 플랫폼 장애가 국민의 미디어 및 관련 서비스 접근·이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 확대
 - 정보 생산·유통 진입장벽 완화로 불법·유해정보와 저품질 콘텐츠 확산 위험 증가
- ※ 한국의 뉴스 이용경로 : ('16) TV 71%, 소셜미디어 32%, 인쇄 28% ⇒ ('26) TV 58%, 소셜미디어 47%, 인쇄 18%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디지털뉴스리포트 2026」)
- **(미디어 이용격차 심화)** 플랫폼 중심으로 미디어 이용환경이 변화하면서 디지털 활용역량과 이용여건에 따른 접근·이용·활용격차 심화

✓ 플랫폼 중심 미디어 환경에 대응한 국민의 접근·참여·선택권 보장과 플랫폼 책임성 강화 필요

◆ AI 전환에 따른 미디어산업 혁신 촉진과 역기능 대응 필요

- **(AI와 미디어 접목)** 미디어콘텐츠 생산·유통 전 과정에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제작방식과 콘텐츠 유통·이용환경 변화
 - 제작비용 및 기술 진입장벽 완화로 개인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크리에이터 산업 부상·활성화
 - 생성형 AI 확산으로 방송영상 학습데이터와 미디어 특화 AI 기술 중요성 증가

【 디지털크리에이터 시장 성장세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전파진흥협회, 「2025년 디지털크리에이터 미디어산업 실태조사」

- **(경쟁력 핵심 요소)** AI 활용 역량이 콘텐츠 품질, 제작효율성 및 서비스 혁신을 좌우하는 미디어산업의 핵심 경쟁요소로 부상
 - 국내 콘텐츠 업계의 우수한 스토리텔링·제작 역량에 AI를 효과적으로 결합 시 자본력 등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 가능
 - * 해외에서는 미디어 분야 핵심 AI 기술 선점을 위해 대규모 투자 및 기술 내재화 등을 본격 추진 중이나 국내 미디어 업계는 초기 대응 단계
 - 반면, AI 전환 대응이 지연될 경우 콘텐츠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국내 콘텐츠 업계의 글로벌 플랫폼 의존도 심화 우려
- **(AI 역기능 확대)** 필터버블*, 환각현상** 등 AI의 편향·부정확성이 이용자의 정보 판단과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 * AI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맞추어 필터링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
 - **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제공하는 현상
 - 또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편향된 결과물 산출 또는 타인의 저작권·초상권·프라이버시권 등 새로운 분쟁·권리침해 위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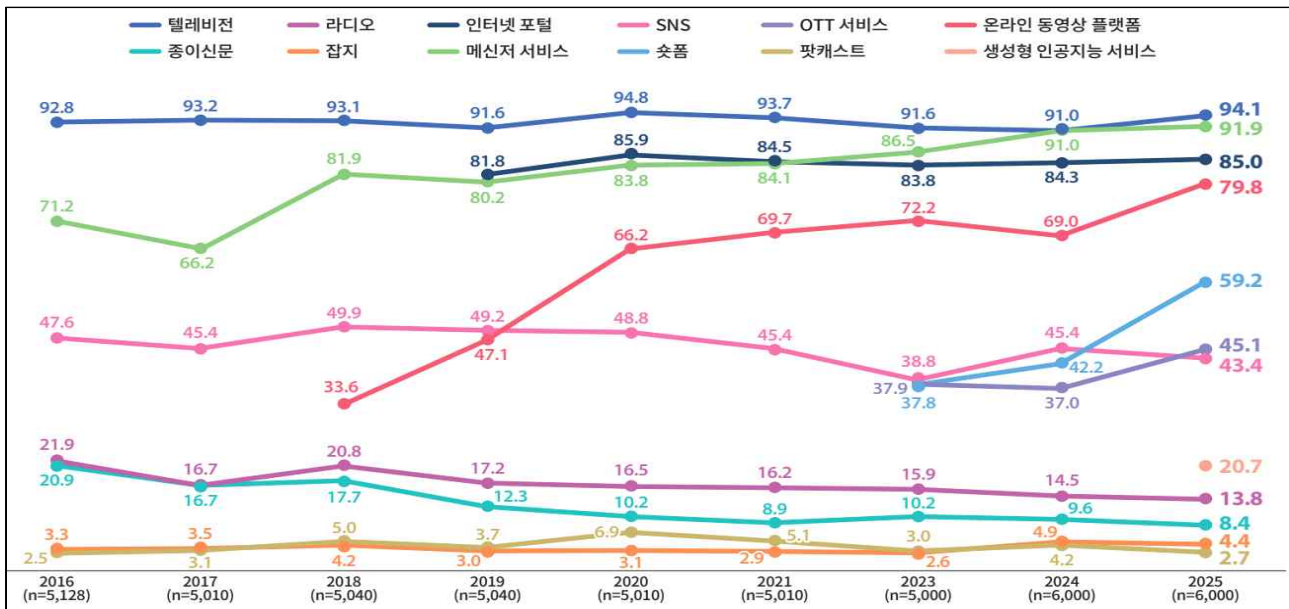
✓ AI를 통한 미디어 혁신 촉진과 더불어 새로운 위험에 대한 이용자 보호 강화 필요

◆ 미디어 시장구조 전환에 대응한 방송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

- **(미디어 중심축 이동)** 미디어 이용의 중심이 방송에서 포털·SNS·OTT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전통 방송미디어의 시장 영향력 분산

※ [지상파방송3사 연평균 가구 시청률] ('14) 21.35% ⇒ ('19)13.70% ⇒ ('24) 8.88%

【 미디어별 이용률 추이 (2016 ~ 2025, %) 】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5 언론수용자 조사'

- **(글로벌 경쟁압력 심화)** 미디어 서비스의 초국경화로 국내외 시장 경계가 약화되고, 글로벌 플랫폼을 중심으로 콘텐츠 유통·투자 경쟁 심화
 - 특히,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콘텐츠 간 협력·유통 연계 확대*에 따라 산업 가치사슬과 사업자 간 이해관계·경쟁구도 복잡화

* BTS 컴백공연 생중계 당일, 국내 넷플릭스 앱 신규설치 6만 건 이상 발생 (연합뉴스, '26.4.1., 'BTS 효과에 넷플릭스 앱 설치 급증... 한주만에 13만6천건 넘었다')

- **(산업 성장기반 약화)** 광고재원의 온라인 이동*, 콘텐츠 제작비 상승 등으로 국내 방송미디어 사업자의 수익성 저하 및 투자·제작 여력 위축**

* 전체 광고시장 점유율('24) : [방송] 18.8%(3조 2,191억원), [온라인] 59.0%(10조 1,011억원)

** [방송사업 매출액 (2025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22) 19조 7,579억원 ⇒ ('23) 18조 9,575억원 ⇒ ('24) 18조 8,320억원 (CAGR △2.4%)

[국내 방송사 온라인 드라마 편성 개수 (2025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19) 109 ⇒ ('24) 75 (CAGR △7%)

✓ 변화된 시장구조에 맞는 규율체계 정비와 지속가능한 산업기반 확충 필요

② 대내외 정책수요 및 관련 해외논의

◆ 국정과제

○ 방미통위는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향상(국정7), 지속가능한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국정108) 등 2건의 국정과제를 소관

- (국정7) ▲방송 공공성·자율성 회복, ▲온라인 미디어 신뢰성 확보, ▲미디어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지역·중소방송사 등 방송 지원 등 구성

구분	주요내용	
국정07.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방송 공공성· 자율성 회복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공적기능 강화, 방송 보도·편성 자유, 방심위 심의의 독립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온라인 미디어 신뢰성 확보	■ 확증편향 등 서비스 부작용 해소를 위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 관련 제도개선 ■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통 예방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 및 규율체계 마련, SNS 과의존 예방 등 아동·청소년 보호 방안 마련
	미디어 사회적 책임 강화	■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충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국민 소통·참여 역량 제고, 시각·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방송 접근권 보장 지원 ■ 전국민이 이용가능한 EBS 교육콘텐츠 제작 지원, 재난 시 국민행동 요령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분쟁조정제도 개선
	지역·중소방송사·공동체 라디오 방송 지원	■ 지역 밀착형 및 지역 주민 참여 콘텐츠 제작 지원, 방송사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 (국정108) ▲미디어 법제 정비 및 성장기반 마련, ▲디지털·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상생성장 지원,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디지털 이용자 권리 보장 등 구성

구분	주요내용	
국정108. 미래 지향적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미디어 법제 정비 및 성장기반 마련	■ 신·구 미디어를 아우르는 합리적 미디어 법제 마련, 네거티브 광고체계 도입 등 방송광고·편성 등 규제완화
	디지털·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 K-플랫폼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불법사이트 차단 콘텐츠 투자 활성화 및 방송미디어 전과정 AI 도입으로 생태계 혁신

구축	디지털·미디어 상생성장 지원	■ 소상공인·중소기업과 방송광고·유료방송 연계 지원, 공정한 외주제작 거래 환경 조성, 청년·여성·정보 스타트업 지원 추진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 온라인상 정보·콘텐츠 건전성 제고와 AI 역기능 (딥페이크 성범죄 등) 대응을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제 체계 정비 및 이용자 피해구제 지원 ■ 디지털 성범죄물 및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한 법·제도 개선, 불법스팸 규제체계 강화, 디지털 유산 승계절차 마련
	디지털 이용자 권리 보장	■ 쇼핑·배달·OTT·여행 등 실생활 밀접 플랫폼·앱마켓에서의 이용자(이용사업자 포함) 피해 방지, 유무선 통신 이용자 선택권 보장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 보완 및 조사·제재 강화

⇒ 미디어의 공적 가치에 기반을 두면서도, 글로벌 미디어 경쟁력 제고 및 공정경쟁 기반 조성 등 산업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정책 기조 반영

◆ 국회 · 언론 · 민원 등 사회적 요구 및 해외논의

- (국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이용 보장,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제도 정비 요청 등
 - ※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주요 반복 지적사항 기준
- (언론) 방미통위 업무보고 (‘26.7.16.) 시 청소년 SNS 규제, 허위조작 정보 대응, 딥페이크·AI 생성물 표시제,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 방송 규제 완화, 공영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언론 관심도 高
- (민원) 디지털·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피해 및 이용자 보호 민원 (불법·허위조작정보, 플랫폼 계정 정지, 부가서비스 등) 지속 증가
- (해외논의) 유럽평의회*는 온라인 환경에서 이용자의 권리·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및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통제 역량 강조
 - 아울러, AI 리터러시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 AI에 대한 책임 있는 활용과 비판적 이해 역량 강화 권고

* Council of Europe, Recommendation CM/Rec(2026)4 ‘Online safety and empowerment of users and content creators’, Recommendation CM/Rec(2026)12 ‘Artificial intelligence literacy’

II. 미디어 주권 정립과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

○ **(미디어의 중요성)** 미디어 외연 확장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미디어의 기능과 영향력 지속 확대 中

- (정치) 사회적 현안에 대한 국민의 정보 습득, 여론형성 및 정치의 의사결정·참여 수단으로 기능, 동시에 허위·조작정보 및 편향된 알고리즘 등은 민주적 여론 형성 저해 우려*

* "구글이 올해 2분기 한국 관련 콘텐츠를 다루며 조직적 여론조작을 벌인 한국어 유튜브 채널 449개 폐쇄" (연합뉴스, '26.8.16., '구글, '여론조작 정황' 한국 정치 유튜브 449개 폐쇄]

- (경제) 광고·커머스 등과 결합하여 새로운 시장 창출 기여*, 반면 플랫폼 중심 시장구조로 인한 경쟁·다양성 저하 우려 상존

* "유튜브의 국내 쇼핑 거래액은 '24년 1천억원, '25년 5천억원, 올해는 1조 4천억원으로 빠르게 성장" (매일경제, '26.4.5., '쑥쑥 크는 '유튜브 커머스'...알리도 합류)

- (사회·문화) 개인 간 소통, 사회적 관계 형성 매개 및 콘텐츠의 생산·유통·소비를 통해 사회적 가치 형성·확산에 영향을 미치나, 문화적 다양성 및 정체성 등 저해 우려*도 대두

* "글로벌 OTT 플랫폼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각국 지역 문화산업에의 위협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 (한겨레, '24.8.10., '빛과 그림자 섞인 OTT, 여전히 매력적일까?]

⇒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미디어는 일상생활 영위 및 사회 소통을 위한 필수 인프라

- 행복추구권, 참정권, 표현의 자유, 사회적 기본권 등 국민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중요성 증대

○ **(현행 제도의 한계)** 방송법 상 참정권, 표현의 자유 보장 등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신유형 미디어까지 포괄하는 데 한계

【 * 현행 방송법 상 기본권 관련 조항 】

참정권	· (제1조) "이 법은 ... 민주적 여론형성 ... 에 이바지함을 목적" · (제6조)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 등
표현의 자유	· (제4조)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 어떠한 규제·간섭도 할 수 없다" · (제6조)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 등
사회적 기본권	· (제76조) "방미통위는 ...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 를 고시" · (제78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KBS·EBS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 재송신" 등 · (제1조) "이 법은 ...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 ..." 등

- 미디어에 대한 접근 기회가 보장되더라도 디지털 이용역량 및 AI

문해력의 차이 등으로 기본권의 실질적 향유에 한계

- 또한, 국내 방송미디어 생태계 기반 약화로 양질의 서비스·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산업적 토대도 약화

○ **(정책방향)** ^보편성, ^주체성, ^안전·신뢰성,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미디어 교육을 통해 미디어 환경에서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고 행사할 수 있는 ‘미디어 주권’ 정립 필요

- 이를 통해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서 미디어 주권자인 국민의 접근·참여·활용·향유가 국가와 사회의 책임 아래 보장되고, 모든 국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영역에서 공존·공생·공영하는 ‘미디어 기본사회’ 조성

【 미디어 주권과 미디어 기본사회 개념도 】

미디어 기본사회 조성
기본적 인권, 다양성과 혁신, 공적 가치가 조화되는 사회



미디어 시민성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주권 정립
▲누구나 미디어를 차별 없이 누리고 ▲주체적으로 참여선택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 마련



국민의 기본권 보장
행복추구권·참정권·표현의 자유(언론출판 등)·경제적 기본권(직업 선택 등)·사회적 기본권(교육노동 등) 등

【 미디어 기본사회를 정책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미래 변화상 】

구분	AS-IS	TO-BE
정치	미디어를 통한 의견 표출과 공론 형성에 참여할 기회·수단 제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환경과 국민 참여 확대로 디지털 민주주의 구현
경제	글로벌 경쟁 심화, 국내 방송미디어산업 성장기반 약화로 콘텐츠 투자 위축 및 산업 경쟁력 저하	⇒ 미디어 산업 內 투자·혁신의 선순환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미디어·콘텐츠 강국 구현
사회·문화	디지털·AI 역량과 이용 여건의 차이가 정보·문화 격차로 확장	누구나 안전하게 미디어를 이용하고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는 포용적 문화사회 구현

Ⅲ.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의 의의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의 의의

- **(배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5.10.1)을 통해 분산된 방송미디어 분야 업무를 통합하고 통신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 업무의 일관된 수행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 「방통위설치법」 - 「방미통위설치법」 운영원칙 (제2조) 비교 】

舊방통위 설치법	방미통위 설치법
① ... 방송과 통신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	① ... 방송미디어, 통신의 이용자 복지 증진과 정보 접근의 형평성 보장을 위하여 노력, 보편적 서비스 실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② ... 방송·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	② ... 방송미디어와 통신 전반에 걸쳐 공공성과 다양성,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집행 ...
③ ...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 ...	③ ...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 권익보호, 정보 신뢰성 확보 및 투명한 유통 구조 형성을 위한 기준과 정책을 마련 ...
	④ ...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통신과 융합된 혁신적 산업 생태계 구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제와 진흥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 하고, 통신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
	⑤ ...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법률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와 함께 민주적 통제에 부응하는 책임있는 운영체계를 확립 ...

- **(의의)** 舊방통위와 달리 산업 진흥, 규제, 이용자 보호 등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종합적 목표 설정 및 점검 가능**
- 또한, 위원 구성 확대 (4인 非常임위원제도 운영)을 통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전문성을 정책에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

② 舊방송통신위원회 비전 평가

- **(그간의 정책기조)** 우리나라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은 기술 중심·시장 확대형*의 선형적 정책 기조 유지

* **(방송)** 케이블TV('95) ⇒ 위성방송('02) ⇒ IPTV('09) ⇒ 종편PP('10) 등

(통신) 정보화, IT산업 활성화(김대중정부) ⇒ 통신·ICT 산업 국가전략 산업화(노무현정부) ⇒ ICT·과학기술 결합(박근혜정부) ⇒ 5G 세계 최초 출시, 통신보편성 강조 등(문재인정부)

- 특히, 방송미디어 분야에서는 공적가치에서 시작하여 산업적 가치도 함께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화

- **(舊방통위 비전 분석)** '14년 이후 제3기 방통위부터 제6기 방통위까지 총 3번의 비전 및 정책과제를 발표

- 모든 비전은 '방송 공공성 제고', '방송산업 활성화', '이용자 보호' 관련 세부 정책과제를 포함하되, 일부 과제는 연속적으로 선정

【 제3기 ~ 제5기 방통위 비전의 주요 정책과제 】

구분	제3기 ('14. ~ '17.)	제4기 ('17. ~ '20.)	제5기 ('20. ~ '23.)
방송 공공성 제고	·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 · 공정성 평가 강화 · 공영방송 책무 강화 · 지역방송 지원확대 · 재난방송 체계 강화 · 남북 방송교류 확대 · EBS 지원 강화 · MMS 추진 · 공공·공익채널 제도 개선 · 미디어 다양성 증진	·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 · 방송평가 제도 개선 · 공민영 체계 정립 · 지역방송 활성화 · 재난방송 체계 확립 · 남북 방송교류 확대 · MMS 본방송 도입 및 채널 활성화 · 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 설치 · 지상파 라디오 정책 방안 마련 · 공익채널 활성화	·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 · 공영방송 공적책무 평가 및 협약제도 도입 · 공영방송 임원선임 절차 개선 · 지역방송 활성화 · 재난방송 지원 확대 · 남북 방송교류 확대 · MMS 활성화, 교육 콘텐츠 지원 · 수신료 위원회 설치 ·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 · 방송프로그램 공정성 강화 · 공익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방송 산업 활성화	· 방송광고 및 편성제도 개선 · 방송광고 금지품목 완화	· 방송광고제도 전면 개편	· 광고·협찬규제 개선 ·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도입 · 편성규제 개선 · 방송광고 결합판매

구분	제3기 ('14. ~ '17.)	제4기 ('17. ~ '20.)	제5기 ('20. ~ '23.)
	· 방발기금 징수 제도 개선 · 방송채널 해외 송출 확대 · 한류 확산 거점 구축 · FTA 통한 해외 진출 촉진 · UHD 생태계 조성 · 스마트미디어 활성화 및 효과측정 · 외주제작 생태계 조성 · 콘텐츠 제작 기반 확충	· 한류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 해외 주요국과의 공동 제작 확대 · 국제 콘텐츠 행사 유치 · 지상파UHD 방송 도입 및 활성화 · 종편 비대칭 규제 개선 · 신유형 융합서비스 관련 제도 정비	- 제도 개선 · 크로스미디어랩 도입 · 방발기금 재원 확대 · 방송콘텐츠 해외진출/유통지원 · UHD 방송 활성화 · 정부광고 수수료 배분 합리화 ·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 민영방송 자율성 제고 · 라디오방송 활성화
시청자/이용자 권익	·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 시청자 참여 지원 · 장애인 방송 확대 · 이용자 보호 확대 (결합상품 등) · 이용자 보호 평가 확대 · 이용자 보호원 설립	·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확대 · 장애인 방송 VOD 서비스 활성화, 스마트 수어방송 상용화	· 미디어 리터러시 확대 · 온라인 미디어 교육 플랫폼 활성화 · 지역밀착형 미디어 교육 확대 · 장애인 방송 활성화 · 소외계층 종합 지원 체계 마련 · 신유형 광고 이용자 보호

- **(舊방통위 평가)** '규제기관'의 성격상 규제·제도 개선 과제 위주로 추진, 콘텐츠 지원 등 예산사업은 부족하여 **규제-진흥 간 시너지 효과 미흡**

※ 「유료방송 발전방안('16.,미래부)」 및 「디지털미디어생태계 발전방안('20.,과기부)」 등 산업 활성화 정책방안이 비전과 독립적으로 발표

- 또한, 현안 과제 중심으로 설계되어 **중장기 관점**에서의 보완 필요

※ 英 Ofcom은 '25년 "Transmission Critical"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의 공영미디어 시인성 강화, 안정적 콘텐츠 재원 확보, TV 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래방향 설정 등 6대 중장기 미디어 정책과제 발표

※ 다만, 3~5기 방통위 합의 처리율은 약 97% 수준으로(의결안건 기준), 합의제 구조 자체가 정책 추진·결정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님

IV. 제1기 비전[안]

비 전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

관계기관
유기적
협력체계



전문위·특별위
활성화

【 미디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4대 목표 】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접근 강화

국민 주도의
능동적 참여 확대

안전·신뢰 기반의
자율적 선택 보장

혁신·상생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 12개 정책과제 】

1 이용취약계층
미디어·통신
접근성 강화

2 지역 방송미디어
접근성 강화

3 공익·필수정보
접근성 강화

1 미디어·AI
활용역량 강화

2 미디어 창작·
표현 기회 확대

3 미디어·통신
참여환경 조성

1 미디어·AI
투명성 및 이용자
선택권 강화

2 AI·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

3 통신·온라인
공정경쟁 및
이용자 권익 강화

1 미디어 법·
제도 혁신

2 방송미디어산업
혁신 및 글로벌
성장기반 강화

3 방송미디어
재원구조 개선

【 핵심 정책수단 】

< 맞춤형 지원 >	< 참여 확대 >	< 제도 혁신 >	< 협력·상생 >
☒ 미디어·AI 바우처	☒ 국민참여·의견반영	☒ 규제·법제 정비	☒ 관계기관·민간 협력

V. 4대 목표별 정책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안)

1.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접근 강화

1 | 이용취약계층 미디어·통신 접근성 강화

◆ 장애·연령 등 이용여건에 따른 격차 해소를 통해 **누구나** 미디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① 소외계층 미디어 차별 해소

○ (현황) 미디어 접근·이용 방식이 다양화되고, 장애 개념도 사회·문화적 장벽 등으로 확대*

* 「장애인권리보장법」상 사회·문화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과 신체·정신적 요인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

○ (추진내용) 기존 시각·청각 장애인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미디어 이용제약을 고려한 포괄적 접근정책으로 전환

* (방송법 제69조)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 장애인방송 수신기 등을 보급하는데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서 지원

- (장애인방송 지원)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 제작비 지원, 발달장애인 콘텐츠 제작 및 보급 추진

- (미디어 이용 바우처) 시각·청각 장애인 맞춤형 TV 보급에서 벗어나 장애유형별 맞춤형 미디어 이용 바우처 지원으로 단계적 전환

- (장애인방송 신기술 개발) AI기술 활용 방송콘텐츠 음성-자막-수어 변환시스템 고도화·활용도 제고 및 AI 자동화면해설 시스템 개발·공유

- (종합계획) 이용자 중심 서비스 실현, AI 기반 접근성 기술 공유 생태계 조성, 장애 범위 확대에 따른 법·제도 개선 등 종합계획 마련

○ (조치 필요사항)

▶입법, 제도 마련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기본사회 실현 종합계획' 마련 ('26.12.)
▶예산확보, 사업추진	✓장애인방송 신기술 개발 (계속), 장애인방송 지원 (계속)

② 사회 취약계층 맞춤형 바우처 도입

- (현황) AI 기술 발전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의 AI 이용·인식률이 낮아*
딥보이스,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활용한 범죄피해 증가 예상
 - * 70대 이상 고령층의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률은 8.5%로, 50대 (29.7%)·60대 (18.4%)보다 낮은 수준 (과기정통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5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 (추진내용) 취약계층의 AI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기초적 이용과 피해예방을 지원하여 이용격차 완화
 - (AI 바우처 도입) 고령층·장애인·농어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료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여 이용·체험 기회 확대
 - (AI 활용·피해예방 교육) 바우처 이용에 필요한 기초 활용교육 및 AI 악용 범죄의 주요 유형·대응방법 피해예방 교육 제공
- (조치 필요사항)

▶예산확보, 사업추진 ✓고령층 등 취약계층 AI 피해예방 및 활용역량 강화사업 추진

2 지역 방송미디어 접근성 강화

◆ 지역 간 미디어 이용격차를 완화하여 어디서나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① 지역·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 (현황) 생활·문화 등과 밀접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미디어 접근을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미디어의 역할 확대 필요
- (추진내용) 지역 주민의 생활정보 접근과 미디어 이용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 (공동체라디오)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생활·문화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 (지역밀착 콘텐츠)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등 제작 지원 확대
- (조치 필요사항)

▶예산확보, 사업추진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사업, 지역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추진

② 지상파 라디오 통합플랫폼 구축

- (현황) 국내 라디오는 FM 수신기 감소, 디지털 라디오 非전환, 일부 방송사의 개별 앱 운영 등 분절된 서비스로 국민의 접근성 취약
 - ※ 66개 라디오방송사업자 (‘25년 방송사업자 허가 현황) 대비 라디오 앱은 14개 불과
- (추진내용) 방송사·지역별로 분산된 라디오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계하여 접근·이용 편의 제고
 - ※ 일본,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라디오 통합플랫폼 운영 中
- (플랫폼 구축) 지상파 라디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구축
- (참여 확대) 자체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중소·공동체라디오의 플랫폼 참여를 지원하여 디지털 전환 및 콘텐츠 유통 확대
- (조치 필요사항)

▶예산확보, 사업추진	✓'라디오 방송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
-------------	------------------------------

③ 찾아가는 미디어 서비스 확대

- (현황)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미디어 이용·체험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으나, 지역·거주여건 등에 따라 접근이 어려운 국민에 대해 교육 등 지원 필요
- (추진내용) 미디어나눔버스* 등 이동형 미디어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간 미디어 이용기회 격차 완화
 - * 방송 체험·제작 설비를 탑재한 차량으로, 미디어 역량교육 강사가 함께 찾아가 미디어 역량교육·체험 제공
- (찾아가는 서비스) 도서·산간 등 미디어 인프라 접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송제작·미디어 체험 기회 제공
- (지역연계) 학교·복지시설·지역기관 등과 협력하여 지역별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검토
- (조치 필요사항)

▶예산확보, 사업추진	✓미디어나눔버스 추가 구축 (‘26년 2대 → 총 10대)
-------------	----------------------------------

◆ 재난·국민관심행사 등 공익·필수정보에 **언제든 적시**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① 재난정보 접근성 강화

- (현황) 재난 발생 시 정확·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재난방송 운영 및 국민행동요령 등 재난정보 콘텐츠 제작·보급 中
- (추진내용) 재난방송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이 필요한 재난정보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추진
 - (제도개선) 재난방송 제작지원 및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추진
 - (정보제공)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 콘텐츠 제작 및 확산 ('26년 110편)
- (조치 필요사항)

▶입법, 제도 마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입법 지원 (계속)
▶예산확보, 사업추진	재난 대비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제작 보급

② 국민관심행사 보편적시청권 보장

- (현황) '26.2월 동계올림픽 중 국내 선수 경기 미중계, 6월 월드컵 중계 중단 위기 등 상황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부재
- (추진내용) 올림픽·월드컵 등 문화적 공공재를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보편적 시청권 보장 장치 마련
 - 중계권 재판매 권고, 협의체 지원, 방미통위 사전협의·자료제출, 지상파 중계 의무 신설 등 방송법 개정 추진

※ '27년 FIFA 브라질 여자월드컵, '28년 LA 하계올림픽 등 예정

- (조치 필요사항)

▶입법, 제도 마련	방송법 개정 (~'26.12) 중대한 국민관심행사 지정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 ('27.6.)
▶예산확보, 사업추진	국민관심행사 중계권 협의체 운영 등 (매년)

2. 국민 주도의 능동적 참여 확대

1 미디어 · AI 활용역량 강화

◆ AI·미디어 역량교육 및 체계적 교육기반 마련을 통해 주체적 미디어 활용 역량 강화

① 생애주기별·계층별 미디어 역량교육 강화

- (필요성) 국민이 정보·콘텐츠를 올바르게 이해·판별하고 AI·미디어를 주체적으로 활용하여 역기능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중요성 증대
- (추진내용) 유아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와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AI·미디어 역량교육 확대
 - (맞춤형 교육) 학교·복지관 등 대상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을 통해 미디어 접근, 비판적 이해, 민주적 소통능력 및 AI·미디어 활용역량 강화
 - (미디어 바우처) 취약계층 청년의 AI·미디어콘텐츠 제작역량 함양, 취·창업 지원 등을 위해 콘텐츠 제작 툴(소프트웨어) 구독료 지원
- (조치 필요사항)

▶예산확보 사업추진

② AI·미디어교육 정책기반 강화

- (현황) 방미통위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디어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처별 역할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필요
 - *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20.8.),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24.3.)
- (추진내용) 범정부 AI·미디어 역량교육 컨트롤타워 구축,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교육지원법) AI·미디어 역량교육 컨트롤타워 설치 등을 위한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 관련 입법* 지원
 - * ㉠이주희 의원('26.8.27.), ㉠김우영 의원('26.5.14.), ㉠이훈기 의원('25.1.13.)
 - (종합계획) 관계부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미디어 역량교육 종합계획」 수립
- (조치 필요사항)

▶입법, 제도 마련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 관련 입법 지원 (계속) ✓'제3차 미디어 역량교육 종합계획' 수립 추진 ('27.~)
------------	--

◆ 미디어 인프라와 창작지원을 통해 국민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표현할**
기회 확대

① 5극 3특 기반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충 · 거점화

- (현황) 시청자미디어센터*는 17개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미디어 역량교육·체험 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나, 권역별 수요 대응과 AI 기반 창작 기능 확대 필요
 - * 시청자가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방송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과 방송 제작 시설·장비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시청자 참여 지원 시설 (현재 12개)
- (추진내용)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인프라로 전환하고, AI 콘텐츠 제작 및 지역 협력을 지원하는 **지역 미디어 핵심거점**으로 육성
 - (센터 확충) 5극 3특 권역별 인구·면적, 기존 센터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1개 센터 구축을 기본으로 수요에 따라 추가 구축
 - ※ [5극]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호남권(광주·전남) / [3특] 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
 - (거점화) 미디어센터의 교육·시설·장비 등을 기반으로 AI 콘텐츠 제작·활용 기능 확대, 지역 대학·방송사·기업 등 연계 협력사업 추진
- (조치 필요사항)

▶예산확보, 사업추진	✓시청자미디어센터 단계적 확충 및 지역 미디어 거점화 추진
-------------	----------------------------------

② 미디어 창작 · 콘텐츠 제작 활성화

- (현황) AI 등 제작기술 발전으로 콘텐츠 제작·유통 환경이 변화하면서 일반 국민의 창작 참여와 콘텐츠 유통 지원 필요성 증대
- (추진내용) 국민의 콘텐츠 기획·제작·유통 기회 확대 및 창작 참여 기반 강화
 - (창작지원)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제작 지원
 - (크리에이터 지원) 지역 기반 청년 크리에이터 육성 및 미디어 창업 허브 조성
- (조치 필요사항)

▶예산확보, 사업추진	✓크리에이터미디어 지역센터 확대 ('27.~, 총 6개소)
-------------	----------------------------------

◆ 방송·미디어·통신 서비스와 정책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 강화

① 시청자 참여 · 의견반영 활성화

○ (현황) 「방송법」 개정('25.8.)·시행('26.2.)으로 시청자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 (유료방송 등)되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직무 강화*

* (신설) 채널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가능

○ (추진내용) 시청자위원회가 실질적인 시청자 참여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 추진

- 매체별(지상파, 유료방송, 홈쇼핑 등) 특성에 맞게 시청자위원회 권한·직무, 회의 절차 등 운영 전반을 정리한 「시청자위원회 운영 매뉴얼」 마련

○ (조치 필요사항)

▶입법, 제도 마련 ✓시청자위원회 운영 매뉴얼 발간 ('26.)

② 이용자 참여 기반 통신서비스 점검 · 신고체계 강화

○ (현황) 전국 유·무선 통신 유통점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 신고가 있어도, 증빙 부족·대상 확인 불가로 조치가 어렵고 피해 반복

※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이통사 운영)에 접수된 6,011건 중 증거가 인정되어 이통사의 사전승낙 자율제재 등 후속조치로 이어진 사례는 19.5%(1,176건)에 불과

○ (추진내용)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불편·부당행위 등을 직접 신고하고, 축적된 신고정보를 제도개선과 시장점검에 활용

- (참여형 신고) 가입자의 신고·증빙이 필요한 피해*에 대해 이용자 참여형 자율신고제** ('26.6월 본 시행)를 활성화하고, 계약서 등 증빙을 갖춘 이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실제 피해자의 신고 참여 유도

* △ 광고와 다른 지원금 지급, △ 계약서상 지원금 미기재, △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등

** 시스템을 통해 신고 처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연간 신고 횟수 제한으로 실제 피해자의 신고 유도

- (신고체계 확대) 무선·결합상품 이용자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이용자 피해 유형별 분석과 피해 방지 등 대응 체계 개선

※ 기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유통점 상호 신고)를 '이동전화 이용자 피해 신고센터'로 개편하고, 결합상품 이용자 피해 신고센터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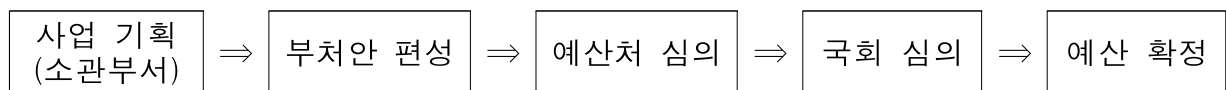
○ (조치 필요사항)

▶예산확보, 사업추진	✓이용자 참여형 신고센터 운영 현황 점검('26.3분기~) ✓결합상품 이용자 피해 신고센터 운영 실시('26.10.)
-------------	--

③ 국민참여형 예산공모제 도입

- (현황)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정책수요를 직접 수렴·반영할 수 있는 참여기회가 제한적

【 현행 예산편성 절차 】



- (추진내용) 국민이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예산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우수 제안을 사업화하는 국민참여형 예산공모제 도입

※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서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제안) 부처 예산안 편성 전, 국민 대상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 개선 아이디어 공모
- (심사·사업화)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수 제안 선정 및 포상하고, 내부검토를 거쳐 사업 반영 추진
- (참여독려) 홈페이지·SNS 등 다양한 채널 홍보를 통한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관심계층의 참여 활성화

○ (조치 필요사항)

▶입법, 제도 마련	✓공모제 도입을 위한 절차 등 검토('27)
------------	--------------------------

3. 안전 · 신뢰 기반의 자율적 선택 보장

1

미디어 · AI 투명성 및 이용자 선택권 강화

◆ 미디어·AI 환경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및 이용자의 합리적 판단과 자율적 선택 보장

① 연계편성 투명성 강화

- (현황) 지상파·중편 - 홈쇼핑 간 연계편성이 지속 증가하고*, 시청자 기만행위 등 연계편성에 대한 문제제기** 지속

* (현황점검 결과) '22년 754건 → '23년 838건 → '24년 935건 → '25년 1,285건

** '짜고 치는 홈쇼핑 연계편성?' 사망여우 지적에 장영란 사과(연합뉴스 '26.3.24.), 유튜버 사망여우 (구독자 수 127만명) 영상, '답 부탁드립니다' ('26.3.23.)

- (추진내용) '지상파·중편 - 홈쇼핑' 간 연계편성 현황점검 강화
(연1회 ⇒ 연2회)

※ 이정현·김재원의원 방송법 개정안(연계편성 관련) 과방위 법안소위 회부·계류 중

- (조치 필요사항)

▶입법, 제도 마련	✓관련 논의 등 대응
▶예산확보, 사업추진	✓연계편성 현황점검 예산확보 추진

② 방송미디어분야 AI 윤리원칙 수립

- (현황) 방송 제작 과정에서 AI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방송의 신뢰성·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 부재

- (추진내용) 방송사가 AI 활용 시 준수해야 하는 인간의 검증, AI 생성물 표시 등 “방송 분야 AI 활용 윤리원칙” 마련 추진

- 인간 중심의 제작환경 보장 및 인간의 최종 검증·책임을 규정하고, AI 생성물 방송 시 화면·음성 등 표시토록 하여 AI 활용 투명성 제고
- 정확성·신뢰성이 요구되는 보도·시사의 경우 실제 촬영·녹음된 자료로 오인될 수 있는 증거자료 생성, 실존인물 재현을 지양토록 특칙 마련

- (조치 필요사항)

▶입법, 제도 마련	✓방송 분야 AI 활용 윤리원칙 마련 ('26.12.)
------------	--------------------------------

③ AI 생성물 유통·관리체계 강화

- (현황) AI 기술 고도화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 생성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면서 이용자의 오인·혼동 등 우려 증가
- (추진내용) AI 생성물의 플랫폼 등에서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를 위해 유통단계에서의 AI 생성물 표시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 (유통: 이용자) AI 생성물 게시자에게 AI 생성물 표시 의무, 일반 이용자에게 AI 생성물 표시의 훼손 및 위·변조 금지 의무 부과
 - (확산: 플랫폼) AI 생성물이 유통·확산되는 포털·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정보제공자와 이용자의 AI 생성물 표시 여부 등 관리 의무 부과
- (조치 필요사항)

▶입법, 제도 마련	✓유통단계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 (26.12.)
▶관계부처 협조	✓AI기본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과기부 협의

④ 추천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 (현황) AI 기술을 활용한 검색·노출 알고리즘으로 인해 이용자의 확증편향 및 필터버블 문제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부작용 발생
- (추진내용)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천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 관련 법 개정 추진
 - (투명성 제고) 알고리즘 추천여부, 작동 원리 및 주요 변경사항 등에 대한 약관 명시 및 투명성 보고 의무 등 제도화
 - (이용자 선택권 보장) 알고리즘 추천 여부 및 추천 방식에 대해 이용자가 스스로 선택·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보장
- (조치 필요사항)

▶입법, 제도 마련	✓추천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 (~27.6.)
------------	---

⑤ 민간 팩트체크 자율생태계 조성 지원

- (현황)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민간의 팩트체크 자율 생태계 조성 지원 및 관리·감독을 위한 근거 마련
 - (투명성센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 사실확인 단체 지원 등을 위한 투명성센터 설립·운영 가능(망법 제44조의17)
 - * SNS,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정보 매개 서비스를 서비스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전년도 말 3개월 일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자율규제 관리·감독)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 운영정책에 따른 신고·조치 등 운용에 관하여 조사 가능(망법 제44조의15)
- (추진내용) 투명성센터 설립·운영, 팩트체크 플랫폼 구축·운영, 자율규제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민간의 사실확인 역량 강화
 - (투명성센터) 사실확인단체 활동 지원, 사실확인준비단체 IFCN 인증 지원, 허위정보 대응 역량 교육 및 국제 협력 강화 등
 - (팩트체크 플랫폼) 팩트체크 결과물 및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AI 교차검증 기능 단계적 도입으로 사실확인 활동의 신뢰도 제고
 - (자율규제 관리·감독 강화) 투명성 보고서 공표(매년 2월, 8월), 방미통위의 조사(수시)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 이행현황 점검
- ※ 서비스 종류, 일평균 이용자를 조사하여 수범 대상 사업자를 매년(2월) 현행화 및 관리
- (조치 필요사항)

▶입법, 제도 마련	✓투명성 센터의 기능, 사실확인 단체 육성방안 등 마련 ('26.12.) ✓자율규제 조치 관련 조사 매뉴얼 마련
▶예산확보, 사업추진	✓투명성 센터 출범('26.10.1.) 및 운영 지원사업 등 추진 ✓팩트체크 플랫폼 구축(~'26.12.) 및 AI기능 도입사업 등 추진

- ◆ 신기술·서비스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위험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① AI 이용자보호 규율체계 도입

- (현황) 딥페이크 성범죄물, 유해 콘텐츠·중독 등 새로운 이용자 피해 발생 및 아동·청소년 등 취약 이용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 증대
- (추진내용) 주요 AI 이용자 피해에 우선 대응, 중장기적으로 이용자 보호의무·권리보장·분쟁조정 등을 포괄하는 AI 이용자 보호체계 구축

【 AI 서비스 이용자보호 법·제도 개선(안) 】

구 분		AI 이용자보호법 내용	추진 방향
단 기	주요현안 대응	성범죄물 대응	정보통신망법 개정
		아동·청소년 특별보호 (유해 콘텐츠, 중독)	
중 장 기	보호체계 구축	이용자 보호의무	별도법 제정 또는 정보통신망법 內 “AI 이용자보호” 절(節) 신설
		이용자 권리보장	
		이용자보호업무평가	
		분쟁조정제도	

- (조치 필요사항)

▶입법, 제도 마련	✓AI서비스 아동·청소년 보호 등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27.6.)
▶관계부처 협조	✓성평등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 협의

② 연계정보(CI) 제도개선

- (현황) 연계정보는 도입 이후 고정값 체계를 유지해 왔으며, 최근 유출사고 반복으로 고정값 구조에 따른 2차 피해 우려 제기
- (추진내용) 주기적 또는 유출 시 갱신이 가능한 연계정보 제도 도입 등 추진
- (조치 필요사항)

▶입법, 제도 마련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27.~)
------------	-----------------------

③ 위치정보 보호 · 관리 강화

- (현황) 위치정보 이용 기기의 다양화 및 보편화로 위치정보 유출 및 악용 범죄가 증가하면서 위치정보 오·남용 우려 확산

※ 불법 위치추적을 통한 스토킹 등 위치정보법 위반 행위 관련 경찰 검거건수는 최근 4년 간 41.9% 증가('22년 155건 → '23년 188건 → '24년 211건 → '25년 220건)

- (추진내용) 위치정보사업 미등록·미신고, 불법 위치추적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획점검 강화

- (조치 필요사항)

▶관계부처 협조

✓미등록·미신고 영업행위에 대해 경찰과의 협력 강화 추진

3 통신 · 온라인 공정경쟁 및 이용자 권익 강화

◆ 통신·온라인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위법행위 대응과 권익 구제 체계를 강화하여 이용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

① 국민 체감형 기획조사 강화

- (현황) 디지털 시장의 위법행위가 복잡·다양해지면서 위반사실의 선제적 피해 발굴에 한계

- (추진내용) 소비자단체·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용자 피해·위법행위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기획조사 실시

- 플랫폼 내에서의 사업자 간 거래 및 방송시장 창작자(외주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거래 조건 설정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규제 개선

- (조치 필요사항)

▶입법, 제도 마련

✓소비자 보호 공공기관 협력 방안 구체화 및 이용자 보호 대응체계 마련 ('26.12.)

② 디지털 플랫폼 시장 위법행위 경제 제재 합리화

- (현황) 과징금 상한 기준으로 인해 위법행위에 대한 위하효과 저하 및 현행법이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추진내용) 과징금 부과 상한 및 산정 기준 (기준 금액, 가중감정) 개선 추진

- (부과상한액 상한 상향) 정률 과징금은 (직전 3년 연평균) 매출액의 10% (현행 3%)로, 정액 과징금은 50억원 (현행 10억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상한액 산정 시 기준 매출액* 변경

* '직전 3년 연평균 매출액' ⇒ '직전 3년 연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중 큰 금액'

- (과징금 기준 금액 개선) △가입자 모집·유지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 금액 (1인당 매출액 등 기반) 산정 기준, △정액 과징금 적용 범위 등 개선 검토
- (가중·감경 기준 합리화) 위법성의 정도, 사업자 부담 능력 등을 감안, 과징금 가중·감경 한도(現 50%)를 상향하고 가중·감경 기준 개선

○ (조치 필요사항)

▶입법, 제도 마련	✓법률(전기통신사업법)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에서 통합 추진 ✓시행령 및 고시 합리화 추진 ('26.9.~)
------------	--

③ 통신이용자 권익구제 강화

- (현황) 통신분쟁이 급증하고 온라인 피해가 다양·복잡해지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이용자 권익구제 필요성 증대

※ (통신분쟁조정 사건) '23년 1,259건 ⇒ '24년 1,533건 ⇒ '25년 2,123건 ⇒ '26년 8월 말 2,970건
(온라인 피해 상담건수) '23년 1,811건 ⇒ '24년 3,856건 ⇒ '25년 4,181건 ⇒ '26년 8월 말 2,799건

- (추진내용) 분쟁조정 제도·조직을 확충하고 데이터·AI 기반의 피해 구제 지원을 강화하여 통신·온라인 피해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해결 지원
 - (분쟁조정) 집단분쟁조정, 사업자 참여의무, 재판상 화해 효력 등을 도입, 분쟁조정위원회 확대(30인) 운영 및 사무지원 인력 확충 등 추진
 - (데이터 관리체계 개선) 통신분쟁·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데이터 표준화·분석 및 통신분쟁 특화 AI 모델 개발*

* AI 상담 챗봇, 조정서 작성·통계분석 지원

○ (조치 필요사항)

▶입법, 제도 마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추진 (계속)
▶예산확보, 사업추진	✓'27년 통신분쟁조정위원 인건비·수당 등 확보 (계속) ✓통신분쟁 데이터 관리체계 개선 및 AI 관련 예산확보 추진

4. 혁신 · 상생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1 미디어 법 · 제도 혁신

◆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게 **방송·미디어 법·제도를 전면 정비**하고, **매체별 특성·영향력**을 반영한 **규제 합리화**로 미래 **산업의 혁신**과 **활력**을 뒷받침

① 통합 미디어법 제정

- (현황) 미디어 법제는 2000년 통합방송법 체계에 머물러, 산업 현실과 매체 영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 방송에는 과거 도입된 강한 규제체계가 유지되는 반면,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OTT 등에는 미디어로서의 규율체계 부재
 - ※ 유럽은 2007년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AVMSD)」을 도입, 방송과 OTT 등 시청각 미디어서비스를 포괄하는 규율체계 정립
- (추진내용) 글로벌 기준에 걸맞은 미래지향적 제도 설계 및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규율체계 정립
 - 방송 매체 영향력이 집중되던 시기에 도입된 방송규제를 재검토,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방송산업의 혁신 및 활력 제고
 - 핵심 매체로 자리매김한 OTT 등 신유형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기본적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이용자 권익 사각지대 해소
 - 신·구 미디어 간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미디어 진흥 및 상생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균형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 · 합리적 규율체계
✓ 방송 사전규제 전면 개선
✓ OTT 필수 규제 마련
✓ 공정경쟁 질서구현

산업 도약 및 상생협력
✓ 다층적·실효적 진흥체계 구축
✓ 정부의 미디어 산업 갈등조정 · 지원역할 강화

공백없는 이용자 권리보호
✓ OTT, AI 활용 미디어 책임강화
✓ 콘텐츠 크리에이터 책임이행과 성장지원

- (추진여건) 과기부 유료방송 정책·진흥 이관을 계기로 정책적 추진기반 강화
- (조치 필요사항)

▶ 입법, 제도 마련	✓ 통합미디어법안 마련 ('26.12.) 및 입법 추진
▶ 관계기관 협조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 출범 시 논의 지원

② 지상파·종편PP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

- (현황) 현행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통합방송법 (2000년) 제정 이후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어, 정책환경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
 - 특히 사업자·학계 등에서 획일적 심사기준·절차와 규제 부담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 지속 제기
 - (추진내용)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심사 기준, 체계, 제도 및 사후관리에 걸쳐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추진
 -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는 과감히 개선, 사업자·매체별 특성에 따른 심사 체계 차별화 및 핵심 심사항목 강화 등 심사 내실화*
- * 사업자별·매체별 심사기준 및 운영 차별화, 경영·재정 능력 심사 강화, 심사 가점 체계 도입, 허가승인 유효기간 연장, 공동체라디오 허가절차 간소화 등
- (조치 필요사항)

▶입법, 제도 마련

✓「지상파방송종편PP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 수립 ('26.10.)
※ '27년 지상파·종편PP 재허가·재승인부터 적용

③ 유료방송 제도 개선

- (현황) 유료방송에 대한 기존 규제체계로는 신규 서비스 출시와 투자·사업재편 등 제약, 시장 대응력과 경쟁력 제고에 한계
 - (추진내용) 변화된 미디어 시장환경과 매체 간 영향력을 반영하여 유료방송 규제를 합리화하고 혁신·투자 여건 개선
 - (요금·약관규제) 적기에 신규 상품·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요금·약관 규제 완화 ※ 요금 규제를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등 개선 검토
 - (소유·겸영규제) 유료방송에 대한 투자 및 사업재편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소유·겸영규제 합리화
- ※ 신문·뉴스의 지분소유 제한(49%), PP의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49%), SO·IPTV의 가입자수 점유율 규제(1/3) 등 완화 검토
- (조치 필요사항)

▶입법, 제도 마련

✓방송법, IPTV법 및 관련 법령·지침 개정 ('27.)

④ 지상파 매체정책 정비

① UHD 정책

- (현황) 「지상파 UHD 방송도입 정책방안('15.12)」,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 정책방안('20.12)」에 따른 당초 목표 달성 지연*

* 수도권·광역시 UHD 방송망 구축은 완료(EBS 제외) 되었으나, 시·군 지역 방송망 구축은 지연 중으로, 의무편성비율(50%) 및 콘텐츠 투자도 목표 대비 부진

- 지상파 직접 수신율('25년 3.5%)과 UHD TV 가구 보유율('25년 20.5%) 고려 시, UHD 서비스 이용 확대에도 한계

- (추진내용) 규제는 완화하고 산업 활력은 제고될 수 있도록 「(가칭)차세대 지상파방송 정책 방안」 마련

※ 망 구축 일정 조정, UHD 콘텐츠 인정기준 관련 사업자 의무 완화·폐지, ATSC 3.0 차세대 서비스 기술개발 및 확산·상용화 등 검토

- (조치 필요사항)

▶입법, 제도 마련	✓실무급 정책협의체 등을 거쳐 정책방안 마련('26.12.)
▶관계기관 협조	✓정책협의체 구성 시 관계부처, 기관 및 전문가 협조

② AM 정책

- (현황) 청취수요 감소, 시설 노후화, 재투자비용 부담 증가 등 구조적 한계 직면

※ 「AM-표준FM 라디오 기능 조정 방안」('21) 이후 22개소 폐지, KBS 등 총 33개 방송국 운영 중

- (추진내용) 전시·재난 상황 대응 및 AM 공익적 역할 등을 고려하되, 유지 필요성이 적은 AM 방송국 기능 조정 방안 마련

※ 예) AM 방송국을 최소화하되 전시·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전국 방송망은 유지

- (조치 필요사항)

▶입법, 제도 마련	✓AM 라디오 기능조정 방안 마련('26.12.)
------------	-----------------------------

③ DMB 정책

- (현황) 대체서비스 확산으로 DMB 이용수요 감소, 방송사 운영 부담 지속

- (추진내용) 이용수요 및 방송사 경영상황 등 고려, DMB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조치 필요사항)

▶입법, 제도 마련	✓지상파 DMB 효율화 방안 마련('26.12.)
------------	-----------------------------

⑤ 편성규제 합리화

- (필요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저하된 편성규제를 개선하여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창의성 및 경쟁력 제고 필요
- (추진내용)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중소·지역방송의 의무를 우선 면제하거나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편
 - 오락물 및 1개국 수입물 편성 상한 규제 폐지, 지역방송의 외주 제작물 편성 의무 면제 등 「방송법」 개정(‘26.5. 발의) 입법 지원
 - 지역민방의 ‘자체편성’ 의무(수중계 제한)를 ‘자체제작’ 의무로 전환, 전문편성 방송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비율 폐지 등 제도 개선 확대 추진

구분	개편 필요성	개편방안
오락프로그램 상한(60% 이하)	장르 융복합, 매체·채널 다양화로 필요성 저하	폐지
1개국 수입물 상한(수입물 중 90% 이하)	해외콘텐츠 이용경로 다원화로 필요성 저하	폐지
순수외주제작 의무(3.2~35%)	활성화된 외주시장 고려 방송사 제작역량 강화 필요	지역방송 면제
수중계 상한(‘자체편성’ 의무) (민방 68~78%, DMB 80% 이하)	제도 취지 유지하되 자체제작의 실효적 견인 필요	‘자체제작’ 의무로 전환 (DMB 면제)
주된 방송분야 편성 의무(60~70% 이상)	다매체 및 온라인 중심 경쟁환경에서 실효성 저하	폐지

○ (조치 필요사항)

▶입법, 제도 마련	✓방송법 개정 입법 지원 및 시행령·고시 개정
▶관계기관 협조	✓문체부와 순수외주제작 등 규제 완화 협의

⑥ 홈쇼핑 규제 합리화 및 상생 강화

- (필요성) 홈쇼핑은 콘텐츠 산업 발전과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주요 산업으로, 안정적인 성장 여건 마련 필요
- (추진내용) ① 홈쇼핑 시장 규제 합리화, ② 홈쇼핑 산업 성장기반 확충, ③ 지속가능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
 - 시장환경에 맞춰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업자의 자율적 운영 여건을 마련하되,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공적 역할은 지속되도록 제도 개선
 - AI·디지털 전환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사업모델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기반 확충

○ (조치 필요사항)

▶입법, 제도 마련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26.5.22)」 이행, 추가 과제 발굴 등
▶관계기관 협조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체계 강화

◆ AI·데이터 기반 혁신과 신규시장·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고, 지역·중소방송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방송미디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

① 방송미디어산업 AI 활용지원

- (현황)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은 AI 데이터 및 독자 기술 부족 등으로 방송콘텐츠 제작 환경의 AI 도입 및 활용의 한계
- (추진내용) AI·디지털 기술을 방송콘텐츠 제작 전반에 확산하여 제작 혁신과 산업 경쟁력 제고
 - (AI 데이터) 방송미디어 AX 추진의 핵심인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방송 제작 과정에 활용
 - (기술개발) 생성형 AI 사전 시각화, AI VFX·디지털 휴먼, 개인화 서비스 등 방송콘텐츠 제작 주기별 핵심기술 개발
 - (인재양성) 방송미디어 분야 예비·재직인력 등을 대상으로 AI 솔루션 활용 제작기술 교육과 AI 활용 방송프로그램 제작 실증 지원
 - (제작지원)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제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으로 제작 환경 혁신 (품질↑, 비용↓) 추진
 - (유통지원) 국내외 콘텐츠 마켓 연계 상영회, 투자설명회를 통한 국내 방송콘텐츠 (드라마, 다큐멘터리)의 글로벌 투자유치 지원
- (추진여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적 역량 결집을 계기로, AI와 방송미디어산업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여건 확대

○ (조치 필요사항)

▶예산확보, 사업추진

- ✓AI 학습용 데이터 시범사업 추진 및 AI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준비 ('27.~)
- ✓디지털미디어 AX 기술개발 신규 추진
- ✓AI 기반 콘텐츠 재생산 지원 신규 추진

② 데이터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

- (현황) 디지털·타깃광고 확산 등 광고시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방송 시청데이터가 사업자별로 분절되어 산업적 활용 한계
- (추진내용) 기존의 표본 기반 시청률 (닐슨, 약 4천 가구) 한계를 보완하여 유료방송 시청데이터 (약 2,100만 가구) 표준화·검증체계 마련, 신뢰할 수 있는 산업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 (표준화) 사업자별로 다른 시청데이터의 항목·정의·산출기준을 표준화 하여 비교·활용 가능한 **공통 데이터 체계 마련**
 - ※ 공통 데이터 항목 정의 (시청률, 광고 도달률, 도달빈도 등), 데이터 추출·관리 기준 통일 등
 - (검증 및 시장 활용) 데이터 정확성을 검증하고 접속정보를 안전하게 연계하여 시청행태 분석, **맞춤형 방송광고 등 산업적 활용 가능성 실증**
 - ※ 데이터 수집·관리 과정 상 오류·중복·누락 데이터 검증 등
- (조치 필요사항)

▶예산확보, 사업추진	✓표준화 및 검증·실증 사업 추진
-------------	--------------------

③ FAST 기반 신규 미디어시장 활성화

- (현황)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 FAST*가 성장하며 콘텐츠의 새로운 유통채널이자 광고수익 창출 수단으로 부상
 - *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TV (Free Ad-supported Streaming TV)
 - ※ 국내 FAST 시장 매출 : '24년 2,300만달러 → '30년 4,800만달러 (Omdia, 「South Korea emerges as Asia's next FAST powerhouse, driven by the global K-content boom」, 2025)
- (추진내용)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내 방송콘텐츠의 FAST 채널화, 글로벌 유통,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지원
- (조치 필요사항)

▶관계기관 협조	✓과기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정책·사업 협력
▶예산확보, 사업추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콘텐츠 지원사업 등과 연계방안 모색

④ OTT 해외진출 지원

- (필요성) 글로벌 OTT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내 OTT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 확대·고도화 필요

* '25년 영업이익 : 티빙 △698억원, 웨이브 △122억원 규모

- (추진내용) OTT 산업 진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지원체계 강화, 중장기 전략 수립을 통해 **종합 지원체계**로 전환
 - (지원체계 강화) 통합미디어법 제정에 발맞춰 OTT 지원역량 및 관계부처 간 협력 강화
 - (지원사업 확대) 해외진출 초기 전략 수립에서 현지 시장 안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현지 법률 컨설팅, 홍보·마케팅)까지 확대
 - (중장기 전략 수립) 국내 OTT 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적 지원정책 발굴 및 중장기 전략 마련

- (조치 필요사항)

▶예산확보, 사업추진	✓정책연구 ('26.下), OTT 해외진출 지원 확대 추진
▶관계기관 협조	✓국제OTT포럼(방미통위)-코리아국제스트리밍페스티벌(과기부)의 지속적인 연계 협력 ('26.~)

⑤ AMS (Asia Media Summit) 개최 등 국제협력 강화

- (현황)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 방송미디어 국제회의인 아시아미디어 서밋 (AMS)* 국내 개최 ('27.9.) 확정

* 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가 매년 개최하는 장관급 회의체로, 40개국400명 이상 참가('24)

- (추진내용) AMS 국내 개최를 계기로 글로벌 정책교류를 활성화하고 국내 미디어·콘텐츠의 해외 진출 연계
 - (국제협력) 장관급 컨퍼런스를 통해 글로벌 규범 논의와 국제협력 확대
 - (산업연계) 콘텐츠 전시·수출상담 및 국민 참여행사 연계를 통해 국내·지역 미디어·콘텐츠의 해외 진출과 국제교류 기회 확대

- (조치 필요사항)

▶예산확보, 사업추진	✓개최지 선정 및 지자체 협의 ('26.12.) ✓회의 기획·운영 전담조직, 예산 등 추진체계 마련 ('26.12.)
-------------	--

⑥ 중소·영세방송 AX 지원

- (현황) 글로벌 OTT·대형 방송사를 중심으로 AI 활용 제작 효율화가 확산되고 있으나, 중소·영세 방송사업자는 비용·전문인력 등 제약
- (추진내용) 중소·영세 방송사업자의 AI 활용 여건을 개선하여 제작 경쟁력 및 AX 대응역량 강화 지원
 - (제작 솔루션 바우처) 방송콘텐츠 제작 과정에 필요한 AI 소프트웨어·솔루션* 도입 비용 등 바우처 지원
 - * AI 기반 3D 디지털 배경·크로마키 합성, 영상·오디오 싱크 매칭, 자동 영상 편집·하이라이트 생성, 지능형 오디오 편집·믹싱, AI 휴먼앵커 생성 등
 - (기술 컨설팅) AI 기술 전문가 현장 파견을 통해 제작 콘텐츠 맞춤형 솔루션 도입 및 노하우 전수 등 지원
- (조치 필요사항)

▶예산확보, 사업추진

✓중소·영세 방송사업자 AI 제작 솔루션 바우처·컨설팅 사업 추진

⑦ 중소방송 청년인력 지원

- (필요성) 중소 방송사의 AX 격차 해소를 위해 현장 이해도와 AI 역량을 확보한 전문인력 파견 및 실무 지원체계 마련 시급
- (추진내용) AI·디지털 역량을 갖춘 청년인력의 방송 제작현장 진입 지원
 - ※ (추진체계) 사전 교육 ⇒ 현장 매칭 ⇒ 실무 지원 ⇒ AX 정착
 - (현장맞춤 사전교육) 지역·중소 방송사업자의 인력수요를 반영한 실무교육 실시, 현장 배치에 필요한 AI 제작역량 확보
 - ※ 중소 방송사업자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제작 공정, 필요 직무, 활용 예정 기술, 요구 역량 등을 조사하여 교육과정과 인력 배치 분야 반영
 - (AX 실무인력 지원) 전국 방송사업자* 대상으로 AI·디지털 역량을 갖춘 청년 인력을 선발·파견하여, 방송 제작공정의 AX 지원 (3개월)
 - * 인력난 및 AX 기술 도입이 시급한 중소·영세 방송사 우선 배치

- (채용 인센티브) 방송사가 지역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시키는 경우 지역·중소방송 제작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인건비 지원) 신규 청년인력에 대해서는 제작지원금의 인건비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지역방송의 신규채용 부담 경감

* (현행) 정규인력 인건비 사용 불가 ⇒ (개선) 청년 신규인력 인건비로 일정 범위 사용 허용

○ (조치 필요사항)

▶예산확보, 사업추진	✓중소 방송사업자 AX 청년 실무 인력 지원 사업 추진 ✓지역방송 제작지원 사업에 청년 신규채용 인센티브 및 인건비 지원 추진
-------------	---

⑧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유통기반 강화

- (현황) 지역방송은 제작비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대규모·장기 콘텐츠 제작 곤란, 제작 이후에도 마케팅·해외 유통 등 역량 부족으로 수익화가 어려운 실정
- (추진내용) 지역 우수 콘텐츠 제작지원 확대 및 제작 이후 유통·사업화까지 연계 지원하여 지역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및 수익기반 강화
 - (대규모·다년도 제작) 다큐시리즈 등 충분한 기획·취재 및 제작기간이 필요한 콘텐츠에 대해 다년도(2년 이상) 지원 및 지원 상한액 확대 (현재 4억원)
 - (유통 바우처) 지역방송사가 콘텐츠 특성과 수요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 유통 바우처*' 도입

* 번역·더빙, 마케팅, 법률·계약 등을 지원하고 콘텐츠 마켓·바이어 매칭과 연계하여 국내외 판매 및 IP 확장 등 수익화 촉진

※ 프로그램 제작지원, 유통 활성화 등을 포함한 「제5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 추진

○ (조치 필요사항)

▶예산확보, 사업추진	✓지역방송 다년도·대규모 제작 및 유통 바우처 지원 확대 추진
-------------	------------------------------------

◆ **방송광고·콘텐츠 거래 제도 개선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구조 합리화**를 통해 방송미디어산업의 지속가능한 수익·재원 기반 확충

① 광고·협찬규제 완화

○ (필요성) 방송광고·협찬규제 개선을 통해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완화하고 방송시장 활성화와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 필요

※ (방송광고·협찬 매출) '16년 4조 442억 ⇒ '25년 2조 9,800억원 (26.3%↓)
(온라인광고 매출) '16년 4조 1,542억 ⇒ '25년 10조 7,204억원 (158%↑)

○ (추진내용) 방송광고·협찬고지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금지품목 규제 완화 등 추가 규제 혁신 추진

※ 일총량제·중간광고 확대, 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 등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26.10.)

- (규제체계) 새로운 형태의 광고를 원활하게 도입하기 위해 방송광고 유형을 개편(7종⇒3유형)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체계 전환

- (방송광고) 일총량제·중간광고 등 규제 개선안 시행(10월)에 따른 광고량·매출·시청자 인식 등을 분석, 추가 규제 완화 및 라디오 광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검토

- (협찬고지) 협찬고지 대상 네거티브 전환*, 제목협찬(타이틀스폰서십) 확대, 지상파 제작협찬 기준 폐지, 고지자막 크기·시간·위치 등 규제 완화

* (현행) 공익캠페인행사, 제작협찬 등에만 허용 ⇒ (개선) 정당, 금지품목, 보도·시사 등 외에 허용

- (금지품목) 타 부처 소관 금지품목* 규제 완화 협의 및 간접·가상광고 시간제한 품목, 협찬주 명칭고지 완화 등 방송 관계법령 개정 추진

* 주류(국민건강증진법, 복지부), 의료(의료법, 복지부), 조제유류(식품표시광고법, 식약처) 등

○ (조치 필요사항)

▶ 입법, 제도 마련	✓ 방송법 개정안 입법 지원 (계속) ✓ 방송광고·협찬 규제 혁신방안 마련 ('26.12.)
▶ 관계기관 협조	✓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금지품목 규제완화 협의

② 광고판매 제도 개선

- (현황) 미디어렐사는 방송광고 외의 광고는 판매 불가 및 소유규제, 재허가 심사에 따른 행정부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 가중
- (추진내용) 크로스미디어렐 도입, 미디어렐 재허가 유효기간 확대 및 소유규제 완화 등으로 안정적인 운영 지원 및 광고판매 효율 제고
 - (크로스미디어렐) 방송광고 外 온라인·모바일·옥외 광고도 판매 가능하도록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안 (‘26.5. 발의) 입법 지원
 - (판매대행) 미디어렐사 재허가 유효기간 연장 (5⇒7년), 대기업 및 광고대행자 관련 소유제한 규제 완화
- (조치 필요사항)

▶ 입법, 제도 마련	✓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안 입법 지원 (계속)
-------------	----------------------------

③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구조 합리화

- (현황)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성과 분담금 부담 완화 요구 동시 제기
- (추진내용) 산업활력 제고를 위해 기금 부담을 완화하되, ①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 마련*과 ②부족분에 대한 추가 재원 확보방안 모색
 - * 현재 당기순손실 발생, 자본금 총액 이상 결손금 발생 등 부담능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기금 분담금 경감·면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
 - (분담금 한시 완화) 방송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기금 분담금을 한시적으로 (3년) 완화하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 감면기준 (예시) 】

- (예1) 법정비율 이상 공익광고 편성* 또는 한국수어 이용 재난방송 시** 소요비용의 일부를 기금 징수액에서 감면하여 공익성 담보
 - * 지상파방송사업자는 0.2% , 종편·보도PP 등은 0.1% 이상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방송법령」·「방송프로그램 편성고시」)
 - ** KBS는 재난방송 시 한국수어 이용의무 有, 그 외 지상파 (EBS 제외) 및 종편·보도PP는 한국수어 이용에 노력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예2) 방송평가 결과를 반영한 순위별 차등 감면을 적용으로 우수 방송사에 대한

- (기부금 항목 신설) 기금 '기부금' 항목 신설, 분담금 부과 대상 외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여 국내 미디어산업 내 선순환 구조 구축

* 「기부금품법」은 국가의 기부금품 모집 원칙적 금지. 다만 「문화예술진흥법(문화예술진흥기금)」, 「보훈기금법(보훈기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국제교류기금)」 등은 동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 (분담금 부과대상 검토) 분담금 징수 대상 방송사와 OTT, 대형 PP 간의 직접적 경쟁관계 등 고려, 분담금 부과대상 확대방안 검토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상 기금은 방송통신 관련 다양한 사업에 사용되는데, 통합미디어법 논의와 병행

○ (조치 필요사항)

▶입법, 제도 마련	✓(기부금) 방송통신발전법령 개정 ✓(분담금) 방송통신발전법령 및 관련 고시 개정
▶관계기관 협조	✓「기부금품법」 개정을 위한 행안부 협의

④ 방송콘텐츠 거래·수익배분 기반 개선

- (현황) 방송콘텐츠 유통 확대에도 불구, 콘텐츠 사용대가 산정·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등 합리적 거래 여건 미흡

- (추진내용) 사업자 간 자율협상을 원칙으로 협상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한 협상 원칙·절차를 정립하여, 콘텐츠 수익의 제작·투자 선순환 유도

- (데이터 검증) 시청데이터, 콘텐츠 제작·구매비 등 협상자료의 제출·검증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협상원칙) 콘텐츠 사용료 관련 기본 원칙·절차 등을 마련하여 사업자 간 자율협상 지원

○ (조치 필요사항)

▶입법, 제도 마련	✓협상자료 제출·검증 근거 마련을 위한 방송법 개정
------------	------------------------------

Ⅵ. 조직역량 강화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① 조직 전문성 제고 및 업무 효율화 추진

- (업무 전문성 확보) 전문·특별위 구성·운영을 통해 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한 실무 자문 및 심의·의결 前 사전 검토 기능 강화
 - ※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균형적인 대응 기반 마련
- (조직 효율성 제고) 업무 효율화 및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부서 간 기능 개편, ▲본부·사무소 간 업무 명확화, ▲AI 활용 확대 등 추진
 - (기능개편) 방미통위 설립 시 이관된 유료방송 및 산업진흥 업무를 반영,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 체감형 정책 수요 중심으로 재정비*
 - * 예) 지역·중소방송 지원사업과 지역인재 육성 등을 같은 국/과 내에서 소관
 - (사무소 이관) 본부는 정책기획에 집중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집행 성격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등은 사무소 이관
 - (AI 활용) 방미통위 인공지능 전환 로드맵을 통해 ▲법령 위반, 불법유해 정보 등 모니터링 ▲안·하가 등 정책 의사결정 ▲일반 행정업무에 AI 활용방안 발굴

②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유관기관·민간을 아우르는 협력체계 구축, 정책 수립부터 집행까지 긴밀히 연계
 - (정책 공조) 산업·이용자·교육·안전 등 복합 현안에 대해 소관·전문성에 따른 관계부처 협업 추진

【 관계부처 주요 협력과제 】

- AI 이용자보호-방송미디어통신분야 AI 활용·산업진흥 연계 (과기부 등)
- 미디어AI 리터러시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및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교육부·성평등부 등)
- 콘텐츠 제작·유통 환경 개선 (문체부 등),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보호 (개보위 등)

- (정책 집행)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에 따른 원활한 사업 이관 및 역할 조정을 통해 사업 연속성·안정적 수행 확보
- (민간 소통) 방송미디어 사업자, 플랫폼, 협회·단체 등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시장 상황과 규제 영향 점검

Ⅶ. 추진일정[안]

4대 목표	12개 정책과제	주요 세부과제	'26	'27	'28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접근 강화	이용취약계층 미디어·통신 접근성 강화	소외계층 미디어 차별 해소			
		사회 취약계층 맞춤형 바우처 도입			
	지역 방송미디어 접근성 강화	지역·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상파 라디오 통합플랫폼 구축			
	공익·필수정보 접근성 강화	찾아가는 미디어 서비스 확대			
		재난방송 접근성 강화			
국민 주도의 능동적 참여 확대	미디어·AI 활용역량 강화	국민관심행사 보편적시청권 보장			
		생애주기별·계층별 미디어 역량교육 강화			
	미디어 창작·표현 기회 확대	AI·미디어교육 정책기반 강화			
		5극 3특 기반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충거점화			
	미디어·통신 참여환경 조성	미디어 창작·콘텐츠 제작 활성화			
		시청자 참여·의견반영 활성화			
안전· 신뢰 기반의 자율적 선택 보장	미디어·AI 투명성 및 이용자 선택권 강화	이용자 참여 기반 통신서비스 점검신고체계 강화			
		국민참여형 예산공모제 도입			
	AI·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	연계편성 투명성 강화			
		방송미디어분야 AI 윤리원칙 수립			
	통신·온라인 공정경쟁 및 이용자 권익 강화	AI 생성물 유통·관리체계 강화			
		추천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혁신· 상생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	미디어 법·제도 혁신	민간 팩트체크 자율생태계 조성 지원			
		AI 이용자보호 규율체계 도입			
		연계정보(CI) 제도개선			
		위치정보 보호·관리 강화			
		국민 체감형 기획조사 강화			
		디지털 플랫폼 시장 위법행위 경제 제재 합리화			
	방송미디어산업 혁신 및 글로벌 성장기반 강화	통신이용자 권익구제 강화			
		통합 미디어법 제정			
		지상파·중편PP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			
		유료방송 제도 개선			
		지상파 매체정책 정비			
		편성규제 합리화			
	방송미디어 재원구조 개선	홈쇼핑 규제 합리화 및 상생 강화			
		방송미디어산업 AI 활용지원			
		데이터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			
		FAST 기반 신규 미디어시장 활성화			
		OTT 해외진출 지원			
		AMS 개최 등 국제협력 강화			
		중소·영세방송 AX 지원			
		중소방송 청년인력 지원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유통기반 강화			
		광고·협찬규제 완화			
		광고판매 제도 개선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구조 합리화			
		방송콘텐츠 거래·수익배분 기반 개선			